

서울특별시 녹색산업육성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6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8조 내지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으로 운영 중인 사무로서
- 나.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녹색기업의 해외통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위탁운영사업자를 공개 선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녹색산업 육성 지원
-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9.1.1. ~ 2021.12.31.)
 - 위탁사무
 - 녹색산업 네트워크 활성화(그린테크샵, 그린비즈랩, 그린인포랩 등 운영)
 - 녹색기업 국내외 판로지원(온라인 기획전, 수출상담회, 사절단파견)
 - 기타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무
 - 19년 소요예산 : 750백만원(민간위탁금)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8조 내지 제2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1.09.30.~'13.12.31. : 1차 위탁관리(2년, 서울산업진흥원(SBA))
 - '14.01.01.~'14.12.31. : 2차 위탁관리(1년, 서울산업진흥원(SBA))
 - '15.01.01.~'15.12.31. : 3차 위탁관리(1년, 서울산업진흥원(SBA))
 - '16.01.01.~'18.12.31. : 4차 위탁관리(3년, 서울산업진흥원(SBA))

라.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요성
 - 녹색산업 육성 지원사무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 기대효과
 - 전문적인 사무 운영·관리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8조~제20조

제18조(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특례 등) ① 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원 조성 및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치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⑥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제20조(녹색산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녹색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경영, 국내·외 마케팅 지원
2. 산업뉴타운과 연계한 녹색산업 집적화 거점 조성
4. 녹색기술 관련 연구개발 거점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찰, 위해요소 제거, 지원체계 개발·운영 등 체계적 지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2.12.31., 2014.5.1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예산조치 : 750백만원('19년도, 민간위탁금)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정책팀 고수봉 (☎2133-3556)